



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해요!!

수산업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등에 관한 간단한 문의 및 다양한 소식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1 카카오톡 검색창에 **FTA** 또는 **FTA이행지원센터**를 검색 → **채널추가**



2 QR코드를 통해 채널추가가 가능합니다. 카카오톡 검색창에 →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→ **채널추가**



2020 수산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

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가이드

2020년 7월 17일 ~ 8월 31일



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
문의 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 ☎1644-4116 또는 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





1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

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
- 어업인등*에 해당하는 자
 - * 어업인등 : 어업인(어업경영자), 어업법인(영어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)
-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* 이전부터 생산한 자
 - * **명 계** '15.12.20(한·중국 FTA) **전경이** '11.08.11(한·페루 FTA)
 - 민대우** '15.12.20(한·중국 FTA) **조 기** '15.12.20(한·중국 FTA)
 - 새 우** '16.07.15(한·콜롬비아 FTA) *젓새우, 닭새우, 크릴새우 제외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·채취·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(일부 위탁도 포함)
- 2019년에 지급 대상 5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·판매한 자
- 2019년 수산관계법(「수산업법」 등)에 의한 어업정지·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

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세요.

-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 *시·군·구청 비치
- 증명서류
 -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2019년도 생산사실확인서(관내·관외) *시·군·구청 비치
 - 2019년도 판매기록(수협외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 *본인 준비
 -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 - 수협외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 *본인 준비
 - 또는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*시·군·구청 비치

2 FTA 폐업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

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- 어업인등*에 해당하는 자
 - * 어업인등 : 어업인(어업경영자), 어업법인(영어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)
- 2019년에 지급 대상 5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·판매한 자
- 해당 FTA 발효일* 이전부터 생산하여 어선·어구·시설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
 - * **명 계** '15.12.20(한·중국 FTA) **전경이** '11.08.11(한·페루 FTA)
 - 민대우** '15.12.20(한·중국 FTA) **조 기** '15.12.20(한·중국 FTA)
 - 새 우** '16.07.15(한·콜롬비아 FTA) *젓새우, 닭새우, 크릴새우 제외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·채취·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(일부 위탁도 포함)
-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% 이상을 차지하는 자
- 새우 양식어업은 대상에서 제외



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세요.

-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*시·군·구청 비치
-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*시·군·구청 비치
- 증명서류 *본인 준비
 - 철거·폐기하려는 어선·어구·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(수협외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

